

신 · 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개 정 사 유 |
|---|--|---|
| <p>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2. (생 략)</p> <p>3. “용도세율적용물품“이란 「관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별표 관세율표 및 <u>법 제50조제4항, 제65조, 제68조,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u> 및 제76조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기획재정부령에서 용도에 따라 세율을 다르게 정하는 물품으로서 세율이 낮은 용도에 직접 사용하거나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p> | <p>제2조(정의)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 <u>법 제50조제4항, 제51조, 제57조, 제63조, 제65조, 제67조의2</u>----- <u>제74조</u>----- ----- ----- ----- -----</p> | <p>○ 관세법 제83조제1항 개정(용도세율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개정</p> <p>* 용도세율 적용대상에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관세 추가</p> |

자가 수입하는 물품을 말한다.

4. ~ 7. (생략)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이 고시에 따라 사후관리 할 물품은 다음과 같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으로서 별표 1의 가에 해당하는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2.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 물품. 다만, 법 별표 관세율표

-----.

4. ~ 7. (현행과 같음)

제3조(사후관리물품) ① -----

-----.

1. -----

----- <단서 삭제>

2. 법 제8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세율불균형물품의 감면세 적용 물품 <단서 삭제>

○ 조문정비

* 사후관리 생략대상 조문신설(제3항)

○ 조문정비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품, 견본품은 제외한다.

3.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 다만, 다음 각 목의 물품은 제외한다.

가.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나. 시약, 시험지, 시험분석용품

다.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

3. 법 제90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단서 삭제>

<삭 제>

<삭 제>

<삭 제>

○ 조문정비

○ 조문정비

○ 조문정비

○ 조문정비

만원 미만인 원재료 및 부분
품, 견본품

4. 법 제91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
을 받은 종교용품 등. 다만, 법
제91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물품은 제외한다.

5. 법 제93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
을 받은 특정물품. 다만, 법 제9
3조제1호, 제3호부터 제14호까
지, 제16호 및 제17호의 물품은
제외한다.

6.·7. (생략)

8.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제118조의2, 제121조의3, 제121
조의10 및 제121조의11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

4. 법 제91조제1호 및 제2호에 --
----- <단서 삭제>

5. 법 제93조제2호 및 제15호에 -
----- <단서 삭제>

6.·7. (현행과 같음)

8. -----
----- 제
121조의10, 제121조의11 및 제1
40조-----

- 조문정비
- 보석의 원석 및 나석 사후관리 대상 생략
- * 기존 '수입신고 수리시'까지 사후관리 하던 보석에 대한 사후관리 생략

- 근거조문 현행화
- * 제2항제5호의 물품 이동

9. ~ 12.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따라 사후관리한다.

1. ~ 4. (생략)

5.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등에 따라 제1항제12호에 해당하는 물품: 용도 외 사용, 양도·양수 승인, 폐기 승인, 멸실확인 및 추정 사항

<신설>

9. ~ 12. (현행과 같음)

② -----

-----.

1. ~ 4. (현행과 같음)

5.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및 「물품의 일시수입을 위한 일시수입통관증서에 관한 관세협약(Convention on Admission Temporaire-Temporary Admission Carnet)」 -----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 근거조문 현행화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 조문정비

당하는 물품은 사후관리를 생략한다.

1. 법 제83조에 따라 용도세율의 적용을 신청한 물품 중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2.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미만인 것

3.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서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 제1항의 단서조항으로 있던 사후관리 생략대상을 별도 항으로 정리

의 수입통관 부서에서 한다.

제3장 사후관리자료의

제출·확인·인계·인수 및

전용물품의 확인

제8조(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심사, 확인 등)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용도세율적용신청서 제출을 생략한다.

1.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 중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물품 (이하 “전용물품”이라 한다)

-----.

제3장 사후관리자료의

제출·확인·인계·인수 및

전용물품의 승인

제8조(용도세율적용·감면·분납

신청서의 제출, 심사, 승인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해당 용도로만 사용할 것을 승인받-----

○ 조문정비

* 법 제83조제1항 개정에 따라 용어 정비

○ 조문정비

○ 관세법 개정(용도세율 신청제외 대상 의미 명확화)에 따른 개정

* 용도세율 신청서 제출 생략대상을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에 가능하도록 명시

○ 조문정비

2. 특정용도에 사용되는 물품으로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품목 번호 결정이나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분류사전심사서를 발급받은 물품

3. (생략)

③ 통관지 세관장은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용도세율적용물품 중 용도세율적용신청서가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의 ‘수입통관현황 - 전용물품 목록조회’화면 등을 이용하여 해당 물품이 세관장이 전용확인·등록한 내역과 동일한 전용물품인지를 전산 확인하고, 동일한 경

<삭제>

2. (현행 제3호와 같음)

③ -----

○ 조문 정비

----- 전용승인
· 등록한 -----

우에 그 확인번호를 등록한다.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품목분류 사전 심사를 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예정지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통관예정지 세관장은 제10조에 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⑥ 제2항 각 호의 물품 이외에 세율이 낮은 용도뿐만 아니라 세율이 높은 용도에 사용가능한 물품은 세율이 낮은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품목번호 결정과는 별개로 용도세율 적용신청을 할 수 있다.

----- 승인번호-----.

④ (현행과 같음)

<삭제>

⑤ 제2항-----

-----.

○ 제8조제2항제2호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삭제)

○ 제8조제2항제2호 삭제에 따라 관련 조문 정비

제10조(전용물품의 확인 및 관리)

① 별표 1의 가 및 별표 1의 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전용물품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용도세울 전용물품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통관지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수입신고 수리 후에는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1.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2.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제10조(전용물품의 승인 및 관리)

① 수입신고된 물품이 별표 1의

해당하여 전용물품의 승인-----

승인신청서-----
-----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

----- . 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물품은 통관지 세
관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1.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2. 카탈로그, 사양서, 관세품목분

○ 용도세울 전용물품 신청대상 명확화

* 전용물품 신청대상은 수입신고된 물품임을 명시

○ 용도세울 전용물품 승인 신청을 수입신고 수리전후 구분없이 관할지 세관에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 불필요한 서류제출 생략

* 별지 제1호 신청서의 수입신고번호로 확인하도록 제도개선

3.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 등 전용
물품 확인에 필요한 서류

② 세관장은 제1항에 따른 전용
물품 확인신청에 대하여 신청서
류 등을 심사하여 전용물품에 해
당하는지를 확인한다. 이 경우 세
관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우에는 견본 또는 현품 등으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관
장이 전용물품을 확인한 때에는
용도세율 전용물품 확인서를 신

류위원회의 품목번호 결정서
또는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품목
분류사전심사서 등 전용물품
승인에 필요한 서류

3. 그 밖의 세관장이 전용물품 승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
-- 승인신청-----

----- 승인한다. -----

-----.

③ -----
----- 승인한 -----
----- 승인서-----

○ 용어정비

○ 용어정비

청인에게 교부하고, 그 확인내역을 사후관리시스템에 전산 등록한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통보한다. 이 경우 관할지 세관장은 통보받은 전용물품의 사후관리를 종결한다.

<신 설>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① 사후관리물품을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양도·양수·임대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

----- 승인내역 -----

----- 사후관리 -----

④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판매·양도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는 전용물품 승인 신청 시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를 지정하여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용도 외 사용 등의 승인신청 및 승인 등) ① -----

사용하거나, 해당용도 또는 다른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

- 판매·양도할 물품의 전용물품 승인 시 미리 해당용도에 사용할 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 제11조제2항 전용물품 동일용도 양수도 신고 간소화를 위해 양수인 신고절차 신설
- 조문의 의미 명확화

도의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서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신청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재수출면세 또는 재수출감면을 받은 물품은 통관지 세관장 또는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 ~ 4. (생략)

② 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물품이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의 사용(양도·양수·임대)

1. ~ 4.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용물품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승인 시 지정된 해당 용도에 사용할 자에 대한 동일용도 양도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 기존 제11조제2항을 제31조제2항으로 이동

○ 전용물품 승인물품의 동일용도 양수도 승인 절차 간소화

* 관세법 개정(제83조제2항 각 호 삭제)으로 용도의 사용 및 양도 시 예외없이 세관장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전용물품 승인

등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후 관리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재료 사용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관리기간인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제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

물품은 동일용도 양수도에 한해 사전에 일괄하여 승인할 수 있도록 함

품 및 견본품

③ 세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용도 외 사용 등 승인 신청에 대하여 신청서류 및 신청사유가 적정한지를 심사하고 법 제103조나 제109조, 영 제120조나 제134조에 따른 감면대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재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 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외 사용 등으로 인하여 요건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요건확인서류를 제출하게 하여 처리한다.

④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 및 확인결과 용도 외 사용 등을

③ ----- 제1항-----

④ -----

○ 제11조제2항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승인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용도 외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제11조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면제를 승인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종결 등록

⑤·⑥ (생략)

제13조(멸실신고) ① 사후관리를 받고 있는 자는 사후관리물품이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5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멸실

1. ~ 3. (현행과 같음)

<삭제>

⑤·⑥ (현행과 같음)

제13조(멸실신고) ① -----

○ 제11조제2항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 재수출면세 물품의 멸실신고 절차 제도개선

신고서에 해당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② (생략)
<신설>

제14조(폐기·수출 승인) ①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사후관리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지

----- 사후관리 -----

----- . 다만,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도 신고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 물품 멸실신고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2항에 따른 멸실 확인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4조(폐기·수출 승인) ① -----

----- 사후

○ 재수출면세 물품의 폐기신청 절차제도개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②·③ (생략)

<신설>

제18조(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 의무) ① ~

④ (생략)

⑤ 제2항에 따른 통관표지는 사후관리물품의 앞면에서 잘 보이

관리 -----.

다만, 재수출면세를 받은 물품은 해당 물품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도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사후관리 물품 폐기승인신청서를 제출받은 세관장은 제3항에 따른 폐기 승인 후 그 사실을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즉시 통보한다.

제18조(사후관리물품 설치장소 반입 및 통관표지 부착 의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 제1항 개정에 따라 처리절차 신설

○ 조문 정비

는 곳에 부착하되 외관상 필요한
경우에는 옆면에 부착할 수 있다.

제21조(서면확인) ①·② (생략)

③ 제2항에 따라 서면확인 요청
을 받은 사후관리업체는 법 제10
8조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사후관리 이행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
식의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
고서를 작성하고 해당 증빙서류
를 첨부하여 세관장이 지정한 기
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한 기간 내에 제출할 수 없
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와 제출예정일을 세관장

-----.

제21조(서면확인)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사후관리 -----

○ 조문 정비

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를 제출받은 세
관장은 제출된 서류에 의하여 제
2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점검·
확인한다.

제24조(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
리) ① ~ ③ (생략)

④ 자율사후관리업체는 사후관리
물품의 설치장소 변경, 일시반출,
수출(일시수출), 멸실, 폐기, 용도
외 사용(양도, 임대), 재반입, 사
용현황 및 종결 등의 변동사항을
별지 제8호 및 제9호서식의 사후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제6조제1항 각 호의 시기로

-----.

④ -----

----- 제2
2조제3항-----
-----.

제24조(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
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사용, 양도, 임대-----

○ 조문 정비

○ 조문 정비

부터 3년 간 변동사항을 입증할 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⑤ 자율사후관리업체의 사후관리 적정성은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 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제19조에 따른 종합심사를 할 때 확인한다.

⑥ ~ ⑦ (생략)

제31조(사후관리 종결신청) ① (생략)

<신설>

--.

⑤ -----

----- 갱신심사 -----
-----.

⑥ ~ ⑦ (현행과 같음)

제31조(사후관리 종결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사후관리물품이 법 제90조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은 학술연구용품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관리 세관장에게 별지 제14호서

○ 조문정비

○ 제11조제2항 조문 이동

식의 사후관리 종결신청서를 제출하여 사후관리 생략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원재료 사용 계획서 등을 제출하여 사후관리 기간인 3개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법 별표 관세율표 제1류부터 제83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 법 별표 관세율표 제84류부터 제97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를 수리한 때 품목당 과세가격이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

② 제1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 신청을 받은 세관장은 신청서에 기재된 사후관리물품 확인사항을 확인한 후에 사후관리 종결 여부 등을 결정한다. 다만, 사후관리 종결 여부 결정을 위하여 현지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22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③ 세관장은 제2항에 따라 사후관리 종결 여부를 결정한 때에는 그 내역을 지체 없이 신청인 또는 수탁기관의 장에게 통보한다.

제32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세관장이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품 및 견본품

③ 제1항 및 제2항-----

④ ----- 제3항-----

제32조(사후관리의 종결) ① -----

○ 제2항 개정에 따라 조문정비

○ 조문정비

는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수탁기관
의 장으로부터 통보받은 때에는
사후관리시스템에 그 사실을
등록하여 해당 물품에 대한 사후
관리를 종결한다.

1. ~ 6. (생략)

7. 제10조제3항에 따라 전용물품
을 확인하였거나 다른 세관으
로부터 통보받은 전용물품 확
인내역과 같은 물품으로 인정
되는 때

8.·9. (생략)

② (생략)

제34조(범칙조사 및 고발의뢰)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
시에 별표 7에 따른 범칙조사 사

-----.

1. ~ 6. (현행과 같음)

7. -----
- 승인하였거-----
----- 승
인내역-----

8.·9.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범칙조사 및 조사의뢰) ①

○ 조문정비

○ 조문정비

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이를 확인한 부서에서 위반사항을 조사하여 통고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위반사항이 「세관공무원의 범칙조사에 관한 훈령」 제1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즉시 조사전담부서로 고발을 의뢰하여야 한다.

② 세관장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고발을 의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고발을 의뢰받은 조사전담부서는 그 처리결과를 즉시 고발을 의뢰한 부

----- 조사의뢰
를 하여야 -----.

② ----- 조사
의뢰를 하려-----
-----.

1. ~ 5. (현행과 같음)

③ ----- 조사
받-----
----- 조사의뢰를 한 -----

○ 조문정비

○ 조문정비

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통고처분 또는 제3항의 고발의뢰 통보 결과에 따라 사후관리담당부서는 관세의 추징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5조(과태료 처분 등) ①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이거나 이를 종결하는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법 제277조 및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1.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물품

-----.

④ -----
-- 조사의뢰 -----

-----.

제35조(과태료 부과 등) 세관장은 사후관리 중 또는 종결시에 별표 8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법 제277조, 영 제265조의2 및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 조문정비

○ 과태료 시정명령 폐지

* 위반사유가 발생했음에도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고 시정명령을 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폐지

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2호)

2.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
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
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
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법 제
277조제5항제3호)

3.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분할
납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
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때 또
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
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

은 때, 그 관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자가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법 제277조제6항제4호)

4. 법 제108조제2항에 따라 법이나 그 밖에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조건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로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사후관리물품을 수출·일시수출한 경우(법 제277조제6항제4호)

② 세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위반사실을 확인한 때에

는 위반자에게 위반 내역, 위반
법조항, 시정 또는 보완할 내용
및 기한 등을 정하여 시정을 명
하고 그 사실을 사후관리시스템
에 등록하여야 하며 위반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라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
회를 주어야 한다. 만약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법 제228조에 따른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법
제277조제5항제5호)

2.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을 비
치·기록하지 않은 경우(법 제2

77조제6항제4호)

3. 사후관리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반출·일시반출한 경우(법 제277조제6항제4호)

4.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법 제277조제6항제4호)

③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시정명령과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그 밖에 이 고시에서 규정하지 않은 과태료 부과·징수, 집행 등의 사항은 「관세법 등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훈령」

을 준용한다.

제38조(전자서류에 의한 전용물품의 확인신청 등) 수입자, 사후관리업체, 「관세사법」에 따른 관세사·관세법인 및 통관취급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전산처리 설비를 이용하거나 서면으로 관할지세관장에게 신청, 신고 또는 보고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른 전용물품의 확인 신청
2. ~ 9. (생략)

제40조(재검토기한) 관세청장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

제38조(전자서류에 의한 전용물품의 승인신청 등) -----

-----.

1. -----
승인 --
2. ~ 9. (현행과 같음)

제40조(재검토기한) -----

○ 조문정비

○ 고시 개정에 따라 기한 재설정

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2024년 7월 1일 -----

 -----6월 30일-----

 -----.

| 현 행 | | | | | 개 정 안 | | | | |
|----------|------|--------------|----------------|--|------------|------|--------------|----------------|---|
| (별표1의 가) | | | | | (별표1의 가) | | | | |
| 구분 | 세종부호 | HSK | 관세율표상 품명 | 용도규격 | 구분 | 세종부호 | HSK | 관세율표상 품명 | 용도규격 |
| 30 | P1 | 1214.90-9090 | 기타 | 사료용 | | | | < 삭 제 > | |
| | | | < 신 설 > | | 48 (신설) | I | 2818.30-9000 | 수산화 알루미늄(기타) | 인조대리석 제조용 |
| 135 | P1 | 7606.12-000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 1. 전자동차이차전지 케이스 제조용 2. 자동차 차체 제조용(미국 알루미늄협회 표준 규격 A6000 계열) | 135 | P1 | 7606.12-0000 | 알루미늄 합금으로 만든 것 | 1. 전자동차 배터리 팩 케이스 및 쿨링블록 제조용 2. 자동차 차체 제조용(미국 알루미늄협회 표준 규격 A6000 계열) |
| (별표1의 나) | | | | | (별표1의 나) | | | | |
| 구분 | 세종부호 | HSK | 관세율표상 품명 | 용도규격 | 구분 | 세종부호 | HSK | 관세율표상 품명 | 용도규격 |
| | | | < 신 설 > | | 1 | P1 | 1214.90-9090 | 기타 | 사료용 |
| (별표 2) | | | | | (별표 2) | | | | |
| 일련번호 | 품 명 | | | 용도의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 일련번호 | 품 명 | | | 용도의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
| | | | | | | | | | |

| 일련 번호 | 품 명 | 용도의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 비 고 |
|----------|---|--|--------|
| 1 |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울) 가. 부분품 및 원재료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확인)물품 ③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 1의 나 물품 |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 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 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2년 1년 1년 | |
| 2 | 관세법 제88조제2항 해당물품(외교관용물품중 양수제한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88조제1항의 물품 | 3년 | |
| 3 | 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재료 및 부분품) ※ 사후관리 비대상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89조제1항제1호의 물품 |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 |
| 4 |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 (1)사후관리 비대상 : ①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 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사후관리 면제 신청 가능 ①제1류 내지 제83류에 해당 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또는 제84류 내지 제97 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 본품으로서 3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 사용시는 전부사용일 1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 |
| 5 | 관세법 제91조 해당물품(종교·자선·장애인용품) | | |

| 일련 번호 | 품 명 | 용도의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 비 고 |
|----------|---|---|--------|
| 1 | 관세법 제83조제1항 해당물품(용도세울) 가. 부분품 및 원재료 나. 기계·기구·시설용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다. 상기 가, 나 이외의 물품 ※ 사후관리 생략 : ①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것. ② 고시 제10조에 해당하는 전용(승인)물품 ③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별표 1의 나 물품 |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 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2년 1년 1년 | |
| 2 | 관세법 제88조제2항 해당물품(외교관용물품중 양수제한물품) (삭 제) | 3년 | |
| 3 | 관세법 제89조제1항제2호 해당물품 (반도체제조용장비 제조 또는 수리용 원재료 및 부분품) ※ 사후관리 생략 : 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삭 제) |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 |
| 4 | 관세법 제90조제1항 해당물품(학술연구용품) 가. 부분품, 원재료 및 견본품 ※ (1)사후관리 생략 : ①제84류 내지 제97류에 해당하는 물 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2)사후관리 생략 신청 가능 ①제1류 내지 제83류에 해당 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본품 또는 제84류 내지 제97 류에 해당하는 물품 중 수입신고수리시 품목당 과세가격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인 원재료, 부분품 및 견 본품으로서 3월 이내 사용될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나. 제2호 해당물품(시약류 제외) 다. 제3호 및 제4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4년 이상 (2)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생략 : 법 제90조제1항제1호의 물품 |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 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 사용시는 전부사용일 1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 |

| 일련 번호 | 품 명 | 용도의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 비 고 |
|----------|--|---|--------|
| |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1조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 | 3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 |
| 6 |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가. 제2호 해당물품 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4) 부분품 다. 제18호 해당물품 ※ 사후관리 비대상 : 법 제93조제1호, 제3호 내지 제14호 및 제16호 내지 제17호 | 행사종료일 3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수입신고수리일 | |
| 7 | 관세법 제95조제1항 해당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나. 제3호 해당물품 ※ 사후관리 면제대상 : 법 제95조제1항제1호의 물품 중 자동차의 부분품 | 1년 6개월 | |
| 8 | 관세법 제107조제2항 해당물품(분할납부물품) | 분할납부 최종납부일 | |
| 9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가. 제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 해당물품 (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2) 상기 (1)이외의 물품 |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 |
|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제1항 해당물품 | 3년 | |
| 11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해당물품 가. 제1호 해당물품 나. 제2호 해당물품 | 3년 3년 | |

| 일련 번호 | 품 명 | 용도의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 비 고 |
|----------|---|---|--------|
| 5 | 관세법 제91조 해당물품(종교·자선·장애인용품)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 사후관리 생략 : 법 제91조제3호 내지 제5호의 물품 | 3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 |
| 6 | 관세법 제93조 해당물품(특정물품) 가. 제2호 해당물품 나. 제15호의 기계기구 등 (1) 내용연수 5년 이상 (2) 내용연수 4년 (3) 내용연수 3년 이하 (4) 부분품 다. 제18호 해당물품 ※ 사후관리 생략 : 법 제93조제1호, 제3호 부터 제14호 및 제16호 부터 제18호 | 행사종료일 3년 2년 1년 또는 설치완료 확인일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수입신고수리일 | |
| 7 | 관세법 제95조제1항 해당물품(환경오염방지물품 등) 가. 제1호 및 제2호 해당물품 나. 제3호 해당물품 (삭 제) | 1년 6개월 | |
| 8 | 관세법 제107조제2항 해당물품(분할납부물품) | 분할납부 최종납부일 | |
| 9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제1항 해당물품 가. 제3호, 제14호, 제17호, 제19호, 제20호, 제21호 및 제22호 해당물품 (1) 제3호의 물품 중 부분품 및 부속품 등 소모성 기자재 (2) 상기 (1)이외의 물품 | 3월 다만, ①특정용도 사용 후 사실상 소모되는 물품은 반입사실 확인일, ②3월이상 해당 용도 불사용시는 전부사용일 3년 | |
| 10 |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의2제1항 해당물품 | 3년 | |
| 11 | 1.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1항 해당물품 가. 제1호 해당물품 나. 제2호 해당물품 | 3년 3년 | |

| 일련 번호 | 품 명 | 용도의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 비 고 |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 해당물품 | 3년 | |
| 1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1항 해당물품 | 3년 | |
| 1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1항 해당물품 | 3년 | |
| | < 신 설 > | | |
| 14 | 1.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2.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물품 |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 |
| 15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해당물품 | 자유무역예정지역 반입사실 확인일 | |
| 16 | 기타 관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의 사용등의 경우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 계·인수하지 않음) (예) 해저광물자원개발법 관세감면물품 등 | 3년 | |

< 신 설 >

(별표 3-1)

|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 |
|--|--|
| <p>1. 용도세율적용 또는 관세감면·분할납부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일정 기간동안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p> <p>-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관할하는 세관(또는 수탁기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의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장 등 현지에 출장하여 점검·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p> <p>2. 수입화주 등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가. 부분품, 원재료 등이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된 경우</p> <p>나. 그 밖에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 준수 의무사항 및 처벌 내용)</p> | |

| 일련 번호 | 품 명 | 용도의 사용 금지기간 및 양도 금지기간 | 비 고 |
|----------|---|------------------------------|--------|
| | 2.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3제2항 해당물품 | 3년 | |
| 12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0 제1항 해당물품 | 3년 | |
| 13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1 제1항 해당물품 | 3년 | |
| 14 | 조세특례제한법 제140조 | 3년 | |
| 15 | 1. 관세법 제97조 재수출면세물품(다만, 사후관리자료는 인계·인수하지 않음) 2. 관세법 제98조 재수출감면세 물품 |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재수출이행기간지정일 | |
| 16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 해 당물품 | 자유무역예정지역 반입사실 확인일 | |
| 17 | 기타 관세법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의 사용등의 경 우 세관장 확인이 필요한 물품 (삭 제) | 3년 | |

* 사후관리 생략 물품의 사후관리기간은 관세법 시행령 제110조에 따름.

(별표 3-1)

|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 |
|--|--|
| <p>1. 용도세율적용 또는 관세감면·분할납부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3년의 범위내에서 일정 기간동안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p> <p>-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설치(사용)장소를 관할하는 세관(또는 수탁기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의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장 등 현지에 출장하여 점검·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p> <p>2. 수입화주 등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라 해당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지 세관장에게 분기 단위로 일괄하여 사후관리 종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p> <p>가. 부분품, 원재료 등이나 그 밖에 사후관리기간이 3개월 이내인 물품이 사후관리기간 만료일 이전에 해당 용도에 사용된 경우</p> <p>나. 그 밖에 사후관리물품이 해당 용도에 사용됨으로써 사실상 소모되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될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p> <p style="text-align: center;">(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 준수 의무사항 및 처벌 내용)</p> | |

| 준수 의무사항 | 준수사항 위반시 추정 및 처벌 | |
|---|----------------------------------|--|
| | 구 분 | 내 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사용)장소 변경시 신고 의무 · 설치(사용) 장소에 1개월내 반입의무 · 통관표지 부착의무 ·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 · 용도의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 일시반출(기한연장)시 신고 의무 · 멸실사실 신고 의무 · 폐기, 수출(일시수출)시 승인신청 의무 · 합병 분할합병 등의 경우 신고 의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주식양도시 감면 세액의 납부의무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3항) |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등 |
| |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4항) |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등 |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4항) | 직접 수입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 |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5항) |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별표 3-2)

|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 |
|--|--|
| 1. 재수출 (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재수출예정일까지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
| -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지세관장(재수출 감면물품은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의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장 등 현지에 출장하여 점검·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
| 2. 수입화주 등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용도의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사후관리기간중에 감면받은 당해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또는 임대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할지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나. 폐기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거나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물품 | |

| 준수 의무사항 | 준수사항 위반시 추정 및 처벌 | |
|---|----------------------------------|---|
| | 구 분 | 내 용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치(사용)장소 변경시 신고 의무 · 설치(사용) 장소에 1개월내 반입의무 · 통관표지 부착의무 · 사후관리물품 관리대장 비치 및 기록 의무 · 용도의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 일시반출(기한연장)시 신고 의무 · 멸실사실 신고 의무 · 폐기, 수출(일시수출)시 승인신청 의무 · 합병 분할합병 등의 경우 신고 의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말소·주식양도시 감면 세액의 납부의무 |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세법 제276조 제3항) |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등 |
| |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3항) |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등 |
| |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6항) | 직접 수입시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 등 |
| |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관세법 제277조 제7항) |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해당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

(별표 3-2)

| 사후관리 의무사항 안내문 | |
|--|--|
| 1. 재수출 (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수입신고수리일부터 재수출예정일까지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를 받게 됩니다. | |
| - 사후관리는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물품의 통관지세관장(재수출 감면물품은 해당 물품의 설치 또는 사용할 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이 일정기간 동안 당해 조건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여, 용도의 사용이나 무단양도를 방지하고 관세징수를 적기에 확보하고자 “수입자 등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적정하게 이행하고 있는지 서류를 제출받거나 사업장 등 현지에 출장하여 점검·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입니다. | |
| 2. 수입화주 등의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의무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이를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가. 용도의 사용(양도·임대)시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사후관리기간중에 감면받은 당해 용도 이외에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또는 임대 포함)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사후관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
| 나. 폐기 승인신청 의무 :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거나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으로부터 사후관리물품 | |

에 대한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멸실사실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멸실신고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재수출이행 의무 : 재수출(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재수출하고 **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재수출이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관세의 20/100)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별표 4)

- x) 재수출(감)면세 물품의 경우 재수출이행 의무 : 재수출(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재수출하고 **기한내에 세관장에게 재수출이행 사항을 보고하여야 합니다.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관세의 20/100)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추징 및 벌금(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i) 2천만원 이하의 벌금(관세법 제276조제3항)
 - 용도세울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용도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등
 - 외교관·준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할 자가 양수한 때
 - ii)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6조제4항)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장부·자료의 제시·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한 경우 등
 - iii)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4항)
 - 용도세울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용도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경우(다만,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한함)
 - 분할납부승인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세관장의 통관표지 부착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iv)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5항)
 -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또는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별표 5)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제18조 제2항 관련)

에 대한 폐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멸실사실 신고 의무 : 사후관리물품이 재해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멸실신고를 하여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재수출이행 의무 : 재수출(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재수출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관세의 20/100)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별표 4)

- x) 재수출(감)면세 물품의 경우 재수출이행 의무 : 재수출(감)면세를 받은 물품은 세관장이 지정한 기간까지 재수출을 **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재수출하지 않으면 면제된 관세 등과 가산세(관세의 20/100)를 즉시 징수하게 됩니다. 용도 외에 사용하거나 양도(임대)·폐기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사후관리업체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세법에 의하여 추징 및 벌금(또는 과태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i) 2천만원 이하의 벌금(관세법 제276조제3항)
 - 용도세울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용도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등
 - 외교관·준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할 자가 양수한 때
 - ii)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3항)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세관장 또는 세관공무원의 조치·장부·자료의 제시·제출요구를 거부(방해)한 경우 등
 - iii)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6항)
 - 용도세울적용물품 및 관세감면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용도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경우(다만, 당해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된 경우에 한함)
 - 분할납부승인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없이 당해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때
 -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지 아니하거나 세관장의 통관표지 부착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iv)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관세법 제277조제7항)
 -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 또는 그 승인을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때
 - 사후관리물품에 대하여 당해 조건의 이행을 확인함에 있어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등

(별표 5) 사후관리물품 통관표지(제18조 제4항 관련)

(별표 7) 범칙조사 사유(제34조제1항 관련)

| 연번 | 위반 사유 | 위반법조항 |
|----|---|----------------------|
| 1 | 법 제83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용도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3호 |
| 2 | 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교관·준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할 자가 양수한 때 |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3호 |
| 3 | 법 제89조 내지 제91조, 제93조, 제95조, 제97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용도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2호, 제3호 |
| 4 | 이 법 이외의 법령 및 조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용도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2호 |
| 5 | 세관공무원의 질문에 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거나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 |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1호 |
| 6 | 법 제26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서류의 제출, 보고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보고한 경우 |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6호 |
| 7 | 법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관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의 제시·제출요구를 거부한 경우 등 | 관세법 제276조제4항제8호 |

<신 설>

(별지 제1호 서식)

(별표 7) 범칙조사 사유(제34조제1항 관련)

| 연번 | 위반 행위 | 적용법조항 |
|----|--|----------------------|
| 1 | 용도세율의 적용승인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용도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경우 (법 제83조제2항 위반) |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3호 |
| 2 | 외교관준외교관 면세물품 중 양수제한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할 자가 양수한 경우 (법 제88조제2항 위반) |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3호 |
| 3 |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용도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경우 (법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및 제102조제1항 위반) |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2호, 제3호 |
| 4 | 이 법 이외의 법령 및 조약 또는 협정 등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은 물품을 세관장의 확인을 얻지 아니하고 용도의 사용하거나 용도의 사용할 자에게 양도(임대)한 때 (법 제109조제1항 위반) | 관세법 제276조제3항제2호 |
| | < 삭 제 > | |
| | < 삭 제 > | |
| | < 삭 제 > | |

(별표 8) 과태료부과 사유(제35조 관련)

| 연번 | 위반 행위 | 적용법조항 |
|----|---|-----------------|
| 1 |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세관장의 승인을 받지 않고 해당 물품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양도한 경우 (법 제107조제3항 위반) | 관세법 제277조제6항제2호 |
| 2 | 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102조제1항 및 제109조제1항을 위반한 자 중 해당 물품을 직접 수입한 경우에는 관세의 감면을 받을 수 있고 수입자와 동일한 용도에 사용할 자에게 양도한 경우 | 관세법 제277조제6항제3호 |
| 3 | 통관표지 부착 대상물품에 대하여 통관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28조 위반) | 관세법 제277조제6항제5호 |
| 4 |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법인이 합병·분할·분할합병 또는 해산을 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또는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받은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 그 사유를 세관장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7조제4항 위반) | 관세법 제277조제7항제4호 |
| 5 | 법이나 그 밖에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용도세율의 적용, 관세의 감면 또는 분할납부의 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조건의 이행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108조제2항 위반) | 관세법 제277조제7항제4호 |

(별지 제1호 서식)

| | | | |
|---|------------------|--|--------------------------------------|
| 담당부서 | | 용도세울 전용물품 확인신청(확인서) | 처리기간 |
| 담당과장 | | | 14 일 |
| 담당자 | | | |
| 연락처 | | | |
| 수입자 | 상 대 주 | 호 자 소 | 통관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
| 물품명세 | H S 번 호 | 명 | 사업의 종류 |
| | 모델·규격·상표명 | | |
| | 성분·등급 | | |
| | 전용 용도 | | |
| 전용물품이유 | | | |
| 사후관리세관 | | | |
| ※ 전용물품 확인시 유의사항 | | | |
| <p>「관세법」 제83조제1항 단서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을 신청하오니 확인(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p> <p>○○세관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 <p>「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p> <p>○○세관장 직인 귀하</p> | |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수입신고서(수입신고필증) 사본 1부. 3.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4.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또는 견본품) 5.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 | 수수료 |
| | | | 없 음 |

(별지 제2호 서식)

| | | | |
|---|------------------|--|--------------------------------------|
| 담당부서 | | 용도세울 전용물품 승인신청(승인서) | 처리기간 |
| 담당과장 | | | 14 일 |
| 담당자 | | | |
| 연락처 | | | |
| 수입자 | 상 대 주 | 호 자 소 | 통관 고유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의 종류 |
| 물품명세 | H S 번 호 | 명 | 사업의 종류 |
| | 모델·규격·상표명 | | |
| | 성분·등급 | | |
| | 전용 용도 | | |
| 전용물품이유 | | | |
| 사후관리세관 | | | |
| ※ 전용물품 승인시 유의사항 | | | |
| <p>「관세법」 제83조제1항 단서와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을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 년 월 일</p> <p>○○세관장 귀하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 | <p>「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0조제3항에 따라 용도세울 전용물품을 승인합니다. 20 년 월 일</p> <p>○○세관장 직인 귀하</p> | |
| * 구비서류 : 1. 신청서 1부 2. <삭제> 3. 사용방법 및 용도설명서 4. 카탈로그 또는 사양서(또는 견본품) 등 5. 기타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 | | 수수료 |
| | | | 없 음 |

(별지 제2호 서식)

| | | | | | |
|---|------------------------------|---|---------------------|-----------------------|---------------|
| 담당부서 | 용도의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 | | | | 처리 기간 |
| 담당과장 | □용도세울적용물품 □ 관세감면물품 □ 분할납부물품 | | | | 4 일 |
| 담당자 | | | | | |
| 연락처 | | | | | |
| 신청인 | 상 호 | (서명 또는 인) | | 사업자 번호 | |
| | 대표자 성명 | | | 사업의 종류 | |
| | 주 소 | | | | |
| 1. 양수도인 명세 | | | | | |
| 양도인 | 상 호 | 통관고유부호 | | |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사업자 번호 | |
| | 주 소 | 사업의 종류 | | | |
| 양수인 | 상 호 | 통관고유부호 | | |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사업자 번호 | |
| | 주 소 | 사업의 종류 | | | |
| 2. 용도의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물품 명세 | | | | | |
| HS번호 | 품명·규격 | 수량 | 당초감면 (분납)법조항 | 관세감면(분납)액 (적용용도세율) | 이미 납부한 관세액 |
| 통관지 세관명 | 수입신고수리연월일 | 수입신고번호 | 당초 설치장소 | 당초용도 | |
| 3. 승인 신청 이유 | | 4. 변경후 사항 | | | |
| | | 양수인의 감면 (분납)법조항 | 설치장소 (부서명, 전화번호) | 새로운 용도 | |
| <p>「관세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3조, 제107조제3항,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8조, 제1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용도의 사용 등 승인신청하오니 승인(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세관장 귀하</p> | | <p>「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용도의 사용 등 신청을 승인(확인)합니다.</p> <p>20 년 월 일 ○○세관장 직인</p> <p>귀하</p> | | | |
| * 구비서류 : | | 수수료 | | | |
| 1. 신청서 1부(양수도 등으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는 2부) 2. 양수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양수도·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3.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 1부(분할납부물품을 동일용도에 양수도하는 경우에 한함) 4. 기타 감면승계 등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제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의 사용 등으로 인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6. 원재료 사용계획서 1부(제11조제2항에 따른 사후관리 면제를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 없 음 | | | |

(별지 제3호 서식)

| | | | | | |
|--|------------------------------|---|---------------------|----------------------------|---------------|
| 담당부서 | 용도의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승인신청(승인서) | | | | 처리 기간 |
| 담당과장 | □용도세울적용물품 □ 관세감면물품 □ 분할납부물품 | | | | 4 일 |
| 담당자 | | | | | |
| 연락처 | | | | | |
| 신청인 | 상 호 | (서명 또는 인) | | 사업자 번호 | |
| | 대표자 성명 | | | 사업의 종류 | |
| | 주 소 | | | | |
| 1. 양수도인 명세 | | | | | |
| 양도인 | 상 호 | 통관고유부호 | | |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사업자 번호 | |
| | 주 소 | 사업의 종류 | | | |
| 양수인 | 상 호 | 통관고유부호 | | | |
| | 대표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 | 사업자 번호 | |
| | 주 소 | 사업의 종류 | | | |
| 2. 용도의 사용(양도·양수·임대) 등 물품 명세 | | | | | |
| HS번호 | 품명·규격 | 수량 | 당초감면 (분납)법조항 | 관세감면(분납)액 (적용용도세율) | 이미 납부한 관세액 |
| 통관지 세관명 | 수입신고수리연월일 | 수입신고번호 | 당초 설치장소 | 당초용도 | |
| 3. 승인 신청 이유 | | 4. 변경후 사항 | | | |
| | | 양수인의 감면 (분납)법조항 | 설치장소 (부서명, 전화번호) | 새로운 용도 (동일용도 양도시는 당초용도) | |
| <p>「관세법」 제83조제2항, 제88조제2항, 제97조제2항, 제98조제2항, 제102조제1항, 제103조, 제107조제3항, 제10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8조, 제134조 등의 규정에 따라 용도의 사용 등 승인신청하오니 승인(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p> <p>○○세관장 귀하</p> | | <p>「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1조제4항에 따라 사후관리 물품에 대한 용도의 사용 등 신청을 승인(확인)합니다.</p> <p>20 년 월 일 ○○세관장 직인</p> <p>귀하</p> | | | |
| * 구비서류 : | | 수수료 | | | |
| 1. 신청서 1부(양수도 등으로 사후관리가 계속되는 경우는 2부) 2. 양수도(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양수도·임대하는 경우에 한함) 3. 양수인의 관세납부서약서 1부(분할납부물품을 동일용도에 양수도하는 경우에 한함) 4. 기타 감면승계 등 요건확인에 필요한 서류 1부(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5. 수입요건 확인서류(법 제226조에 의한 세관장확인대상물품으로 당초 수입시 제수출 조건 등에 따라 요건확인이 면제되었으나 용도의 사용 등으로 인해 요건확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함) | | 없 음 | | | |

(별지 제3호 서식)

| 담당부서 | | | | | | | 처리기간 |
|---|----------------------------------|-------------|-----|---|------------|---------|------|
| 담당과장 | | | | | | | 즉 시 |
| 담당자 |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수리)서 | | | | | | |
| 연락처 | | | | | | | |
| 신청인 | 상 호 | | | | | | |
| | 주 소 | | | | | | |
| | 대 표 자 | 통 관 고 유 번 호 | | | | | |
| 통관지 세관명 | 수 입 신 고 번 호 | | | | | | |
| 수입신고수리일 | 적 용 법 조 항 | | | | | | |
| 사 업 의 중 류 | 현 설 치(사 용) 장 소 | | | | | | |
| 반입 연 월 일 | 사 용 개 시 연 월 일 | | | | | | |
| 변경 예 정 일 | 변경후 설치(사용) 장소 | | | | | | |
| HS 번호 | 품 명 | 규격 | 수 량 | 과세가격 | 관세감면 (분납)액 | 내국세 감면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관세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 「사후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세 관 장 직인</p> <p>○○ 세 관 장 귀하</p> | | | | <p>「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세 관 장 직인</p> <p>귀하</p> | | | |
| * 구비서류 : | | | | | | 수수료 | |
| 1. 신고서 1부. | | | | | | 없 음 | |
| 2. 변경하고자 하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 | | | | |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 - 정보자료실의 법령정보 중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또는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사후관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 | | | | | 처리기간 |
|---|----------------------------------|-------------|-----|---|------------|---------|------|
| 담당과장 | | | | | | | 즉 시 |
| 담당자 | 사후관리물품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수리)서 | | | | | | |
| 연락처 | | | | | | | |
| 신청인 | 상 호 | | | | | | |
| | 주 소 | | | | | | |
| | 대 표 자 | 통 관 고 유 번 호 | | | | | |
| 통관지 세관명 | 수 입 신 고 번 호 | | | | | | |
| 수입신고수리일 | 적 용 법 조 항 | | | | | | |
| 사 업 의 중 류 | 현 설 치(사 용) 장 소 | | | | | | |
| 반입 연 월 일 | 사 용 개 시 연 월 일 | | | | | | |
| 변경 예 정 일 | 변경후 설치(사용) 장소 | | | | | | |
| HS 번호 | 품 명 | 규격 | 수 량 | 과세가격 | 관세감면 (분납)액 | 내국세 감면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관세법 시행령」 제129조제5항, 「사후 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사용)장소를 변경하고자(변경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세 관 장 직인</p> <p>○○ 세 관 장 귀하</p> | | | | <p>「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12조제7항에 따라 사후관리물품에 대한 설치(사용)장소 변경신고를 수리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신고인 (서명 또는 인)</p> <p style="text-align: center;">○○ 세 관 장 직인</p> <p>귀하</p> | | | |
| * 구비서류 : | | | | | | 수수료 | |
| 1. 신고서 1부. | | | | | | 없 음 | |
| 2. 변경하고자 하는 설치장소와의 관계 자료(필요한 경우에 한함) | | | | | | | |

(별지 제10호 서식)

※ 별지 제11호 서식은 관세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 - 법령·관례 등 - 행정규칙 중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별표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별지 제11호 서식)

| | | | | | | | | | |
|--|--|-----|-----------|------------|------|------|----------|----------|----|
| 담당부서 | | | | | 처리기간 | | | | |
| 담당과장 |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업체용) | | | | 7 일 | | | | |
| 담당자 | | | | | | | | | |
| 연락처 | | | | | | | | | |
| 신청인 | 상 호 | | | | | | | | |
| | 대 표 자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문 서 번 호 | 부서명 | E-Mail 주소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 | | |
|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 회사에서 용도세출의 적용, 관세의 감면 등을 받아 사후관리중인 물품에 대한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 | | | | | | | | |
| ○ ○ 세 관 장 귀 하 | | | | | | | | | |
| 가.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 물품 확인결과(*사용은 반입일자,사용개시일,사용(설치)완료일 중 택일) | | | | | | | | | |
| 사후관리번호 또는수입신고번호(관) | 신고 수리일 | 품명 | 수량 | 사후관 리기간 | 확인결과 | | | 위반 내역 | 비고 |
| | | | | | 사유 | 일자 | 설치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 ○ 건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 | | | | | | | | |
| 나. 사후관리물품 확인 사항 | | | | | | | | | |
| 구 분 | 확 인 사 항 | | | | 확인결과 | | 위반 내역 | 비고 | |
| | | | | | 이상없음 | 이상있음 | | | |
| 공 통 | 업종 : /용도세출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 | | | | | | | |
| |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 | | | | | | | |
| |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의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 | | | | | | | |
| |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 | | | | | | | |
| |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 | | | | | | | |
| |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 | | | | | | | |
| | 사후관리대상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 | | | | | | | |
| 기 계, 기 구 등 |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 | | | | | | | |
| |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전부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 | | | | | | | |
| |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 | | | | | | | |
| 원재료, 부분품등 |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 | | | | | | | |
| 다. 첨부(중빙) 서류 : 예) 반입사실 입증서류, 제조완료보고서·사용(소비)사실 확인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공공기관장 등의 분배(사용)사실 확인서, 사진,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 ※ 동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서식은 관세청 홈페이지< www.customs.go.kr > - 정보자료실의 법령정보 중 사후관리에관한고시 또는 전자민원실의 민원서식(사후관리)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별지 제11호 서식)

| | | | | | | | | | |
|--|--|-----|-----------|------------|------|------|----------|----------|----|
| 담당부서 | | | | | 처리기간 | | | | |
| 담당과장 | 사후관리물품 확인결과 보고서(업체용) | | | | 7 일 | | | | |
| 담당자 | | | | | | | | | |
| 연락처 | | | | | | | | | |
| 신청인 | 상 호 | | | | | | | | |
| | 대 표 자 | | | | | | | | |
| | 주 소 | | | | | | | | |
| | 문 서 번 호 | 부서명 | E-Mail 주소 | 담당자명 | 전화번호 | | | | |
| 1.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2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우리 회사에서 용도세출의 적용, 관세의 감면 등을 받아 사후관리중인 물품에 대한 확인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p style="text-align: right;">20 년 월 일</p> | | | | | | | | | |
| ○ ○ 세 관 장 귀 하 | | | | | | | | | |
| 가. 사후관리물품 서면확인 요청 물품 확인결과(*사용은 반입일자,사용개시일,사용(설치)완료일 중 택일) | | | | | | | | | |
| 사후관리번호 또는수입신고번호(관) | 신고 수리일 | 품명 | 수량 | 사후관 리기간 | 확인결과 | | | 위반 내역 | 비고 |
| | | | | | 사유 | 일자 | 설치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총 ○ ○ 건 (*건수가 많은 경우 별첨 분리 사용) | | | | | | | | | |
| 나. 사후관리물품 확인 사항 | | | | | | | | | |
| 구 분 | 확 인 사 항 | | | | 확인결과 | | 위반 내역 | 비고 | |
| | | | | | 이상없음 | 이상있음 | | | |
| 공 통 | 업종 : /용도세출적용·관세감면·분납승인의 적정여부 | | | | | | | | |
| | 사후관리서류상 품명·규격·제조번호·수량등이 현물과 일치 여부 | | | | | | | | |
| | 세관장의 승인없이 용도의 사용(양도·임대·판매) 또는 폐기여부 | | | | | | | | |
| | 세관장의 승인없이 수출(또는 일시수출) 여부 | | | | | | | | |
| | 세관장에게 신고없이 설치(사용)장소 변경 또는 일시반출 여부 / 1월내 반입 여부 | | | | | | | | |
| | 멸실, 법인 합병·해산, 본인 사망, 파산, 상호·대표자 변경 여부 / 변경사실등 신고여부 | | | | | | | | |
| | 사후관리대상 비치 및 적정 기록 여부 | | | | | | | | |
| 기 계, 기 구 등 | 사후관리기간 적정여부 | | | | | | | | |
| | 사후관리 종결 대상 유무 / 3월경과 전부사용일까지 사후관리대상 여부 | | | | | | | | |
| |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 / 통관표지 부착 여부(통관표지부착대상물품에 한함) | | | | | | | | |
| 원재료, 부분품등 | 해당 용도에 적정하게 사용하고 있는지 / 소요량은 적정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 | | | | | | | |
| 다. 첨부(중빙) 서류 : 예) 반입사실 입증서류, 제조완료보고서·사용(소비)사실 확인서, 원자재소요량증명서, 공공기관장 등의 분배(사용)사실 확인서, 사진, 기타 세관장이 인정하는 서류 등 ※ 동 보고서 내용이 사실과 상이한 경우에는 관련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동 서식은 관세청 법령정보포털(unipass.customs.go.kr/clip) - 법령·관례 등 - 행정규칙 중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또는 별표서식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 | | | | | | | |

(별지 제17호 서식)

| 사후관리 시정명령서 | | | | |
|--|---|-----|---------|------|
| 명령번호 : 세관부호(000)-연도(0000)-연번(00000) | | | | |
| 당사자 | 상 호 | | 대표자 | |
| | 주 소 | | 사업자번호 | |
| | 담당자 | | 전화번호 | |
| 대상물품 | 수입신고번호 | | 신고수리일 | |
| | 통관지 세관 | | 사후관리 세관 | |
| | 품 명 | | | |
| | 규 격 | | 수 량 | |
| 위반내용 |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2항 제4호, 설치장소 변경 미신고 등 | | | |
| 시정내용 | 설치장소 변경신고 이행 등 | | | |
| <p>「관세법」 제108조 제2항, 「관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항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35조 제2항 따라 시정을 명하오니, 년 월 일까지 완료하시기 바랍니다.</p> <p>시정명령 관련 이의가 있을 경우 별지 제18호 서식의 「의견 제출서」에 귀하의 의견을 기술하여 관련 자료 와 함께 우리세관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p> <p>*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p> <p>만일 정당한 이유 없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시정명령과 동일한 사유의 위반행위를 반복한 경우에는 관세법 제277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함을 알려드립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 세 관 장 (인)</p> | | | | |
| 담당부서 | | 담당자 | | 전화번호 |

(별지 제18호 서식)

| 사후관리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제출서 | |
|---|--|
| 1. 시정명령 번호 : 2. 제출인의 인적사항 - 주 소 : - 직 업 : - 성 명 : (남, 여) - 생 년 월 일 : 3. 시정명령에 대한 의견 : 4. 기타: 증거자료(첨부 여부) 등 | |

위 진술은 사실대로 작성한 것입니다.

작성일자 : 년 월 일
 작 성 자 : (인)

00 세 관 장 귀하

<삭 제>

<삭 제>